

정보통신망법의 효율성 극대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청원안

CONTENTS

1. 서론

2. 잊힐 권리란?

3. 등장 배경

4. 개정안 소개

5. 기대 효과

01. 입법취지

1. 정보유통의 피해 감소
2. 인터넷 내용 규제 제도 마련
3. 법정 논란에 대한 지침 제공

*임시조치 : 타인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

02. 잊힐 권리

인터넷 이용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포털 게시판 등에 올린 게시물을 지워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

03. 등장 배경

- 미국의 DMCA의 “notice and takedown” 제도
- 정보 유통에 관여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임시적으로 분쟁을 해결
- 분쟁의 신속한 해결 및 자주적 해결
- 당사자 사이의 분쟁의 자주적 해결 추구

04. 개정안 소개

효율성 극대화 방향

기준
법제화

주관 배제 및
객관성 확보

피해자
급증 방지

현행

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중략)

신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임시조치 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중략)

⑦ 임시조치 기간 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권리 침해에 대한 판단 및 조정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 심의기구를 통해 진행하여야 하며, 그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추가)

2013년 정보보호실태조사

원치 않는 사생활의 누출 · 유출

91.3%

광고 및 스팸 누출 · 유출

77.9%

타인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77.4%

2013년 정보보호실태조사

잊힐 권리 주장

63.7%

인터넷상의 모든 흔적 제거

41.2%

법제화가 필요하다

57.7%

05. 기대효과

절차
간소화

불필요한
부담 삭제

객관적
기준



효율성
극대화

감사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통신 이용 제한에 관한 법률